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18
----------	------

제출년월일 : 2009. 11. 20.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개소(1999.11.12) 및 조례 제정(2006.05.25)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및 환경이 빠르게 변하여 조례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유망기업 유치 및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기업지원 업무를 위하여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SW만을 의미하는 협소하고 한정된 센터 명칭을 IT·SW 융합 등 센터가 추진하는 업무 범위와 방향으로 센터 명칭을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안 제2조).
- 현 조례에 미규정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
- 사업실적이 좋고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하여 센터 입주기간을 최대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17조).
- 타 지역 IT·SW 진흥기관의 시설 사용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센터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8조).

□ 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8. 10. ~ 2009. 8. 30.(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전문
-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안) : 2009. 7. 10.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2009. 7. 15.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안산 정보산업진흥센터”로 하고 제2항 중 “원곡동 643-7번지”를 “연수원로 104-14(원곡동)”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과 같은 조 제5호 중 “애니메이션실”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호 중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사업자”를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사업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조직)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현행 제9조)제1항 중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정보기술 전문가”로 한다.

제13조(현행 제12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9조의”를 삭제한다.

제15조(현행 제14조)제2항 및 제16조(현행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현행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지원실과 비즈니스 지원실의 입주기간을 합산한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현행 제17조)제1항 중 “『안산시 지식기반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를 삭제하고, “1,000분의 15”를 “1,000분의 30”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현행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주한 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하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입주기간은 최초 입주 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소관 실·과		경제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경제정책과장 최 재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산업정책담당 정 규 상
	담당자 성명·전화	이승호 (행정 2858)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u>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u>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u>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u> -----</p>
<p>제2조 (명칭 및 위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u>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43-7번지에 둔다.</p>	<p>제2조 (명칭 및 위치) ①-----<u>따라</u>----- ----- <u>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u> ----- ② ----- <u>연수원로 104-14(원곡동)</u> -----</p>
<p>제3조 (정의) (생략) 1. (생략)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 4. (생략) 5. “입주자”라 함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안산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u>창업·비즈니스 지원실</u>, <u>애니메이션실</u>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 7. (생략)</p>	<p>제3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삭제> ----- 3. ~ 4. (현행과 같음) 5. <u>창업·비즈니스 지원실에</u> 6 ~ 7.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정보기술·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사업자를 위한 운영 및 경영 기술지도</u> 3. ~ 5. (생략) 	<p>제4조(사업) 1. (현행과 같음) 2. <u>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운영 및 경영 기술지도</u> 3.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 (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안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 (위탁운영) ①----- ----- ----- <u>있으며,</u> <u>위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②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p>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제6조 (조직)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 제8조 (생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 ~ 제8조와 같음)
제9조 (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u>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공무원, 지역대학교수, <u>소프트웨어 전문가</u>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 <u>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u> ----- ② <u>정보 기술 전문가</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입주신청)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관련서류에 대하여 제9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센터소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입주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따라</u> ----- <u><삭제></u> -----
제13조 (생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에 따른</u> ----- ----- -----
제15조 (변경사항 통보) ① (생략) 1. ~ 4. (생략) ②센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변경사항 통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u>에 따른</u> ----- ----- -----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센터의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7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에 한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지원실과 비즈니스지원실의 입주기간을 합산한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시설 사용료) ①센터 입주자에 대하여는 『안산시 지식기반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정가액에 대하여 창업지원실은 1,000분의 <u>15</u>, 비즈니스지원실은 1,000분의 <u>25</u>로 사용료를 징수하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8조 (시설 사용료) ①----- <삭제>----- ----- ----- <u>30</u> ----- <u>50</u>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제18조 (생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p>제19조 (퇴거) ① (생략)</p> <p>1. ~ 5.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소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의거 퇴거통보를 확정 받은 입주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p>	<p>제20조 (퇴거)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삭제>----- ----- ----- ----- ----- ----- ----- ----- ----- ③----- <u>따라</u> ----- ----- -----</p>
제20조 ~ 제24조 (생략)	제21조 ~ 제25조 (현행 제20조 ~ 제24조와 같음)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현행)

2006.05.25 조례 제12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43-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산업”이라 함은 정보를 생성·저장·유통하는데 관하여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사업”이라 함은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이용 및 시장성, 경영, 기술, 세무에 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즈니스지원사업”이라 함은 창업지원실 졸업업체 등을 포함한 사업화단계에 있는 유망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비·시설 등의 지원과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입주자”라 함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안산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창업·비즈니스지원실, 애니메이션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의 입주계약 만료 및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등을 통한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운영·관리규칙 위반 등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당해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산지역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
2.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사업자를 위한 운영 및 경영 기술지도
3.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
4. 공용 개발장비 관리·운영
5. 기타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안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위·수탁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수탁관계가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6. 지역의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관련 법인을 설립할 경우
7.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지역대학교수,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입주 및 시설사용

제11조(입주대상 및 자격)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창업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그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비즈니스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및 정보기술 기업
 2. 창업지원실 입주자는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 입주시킬 수 있다.
 3.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으며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
- ③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입주신청) ①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센타소장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자체 심사한 후 관련서류(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관련서류에 대하여 제9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센터소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①센터의 소장은 입주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입주자는 매년 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 촉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변경사항 통보)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업의 변경

4. 기타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

②센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센터의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 사용료) ①센터 입주자에 대하여는 『안산시 지식기반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정가액에 대해서 창업지원실은 1000분의 15, 비

즈니스지원실은 1000분의 25로 사용료를 징수하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분담한다.

- ②제1항의 재산 평정가액은 토지는 연도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시가(감정평가액)로 하되 기존 감정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과 년수 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③센터의 시설 중 정보검색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장은 입주자와 단체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사용목적이 센터 설치 목적에 합당한 경우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18조(졸업)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여야 한다.

1.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②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졸업신청서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퇴거)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창업·비즈니스지원실 주소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4.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소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퇴거통보를 확정 받은 입주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설장비의 사용 및 관리

제20조(공동시설 및 개발장비의 사용) ① 공동시설 및 공동개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전에 입주자가 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순위는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연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장비의 관리) ① 센터소장은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관리카드에 의하여 장비를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노후·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장비의 반출금지) 센터에 설치된 장비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장비를 임의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나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장비사용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위험물 반입을 할 수 없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계약에 의하여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위탁운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918
----------	------

제안년월일 : 2009. 12. 24.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센터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두는 것으로 명시함(안 제2조)
- “소프트웨어산업” 정의 문구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3조)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연수원로 104-14(원곡동)”를 “연수원로 104-14(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한다.

제3조 2호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를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명칭 및 위치) ②센터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원곡동)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②-----연수원로 104-14(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생략) 1. (생략)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의)(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7. (생략)	3.~7. (원안과 같음)